

FSS/2112-07 : 파생상품부채 미계상

- 쟁점 분야: 파생상품부채
- 관련 기준: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(금융상품)
- 결정일: 2014년
- 회계결산일: 2011.1.1.~2011.12.31

1. 회사의 회계처리

종합상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A사(이하 ‘회사’)는 투자목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B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사모펀드인 C사의 재무적투자자로 참가하였다. 회사는 다른 참가자*에게 투자원금에 대한 약정수익을 보장하기 위해, 다른 참가자가 가진 보유지분에 대하여 풋옵션(회사에 되팔 수 있는 옵션)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, 풋옵션 평가 및 공시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.

* 사모펀드 C사의 다른 재무적투자자(LP) 및 업무집행사원(GP)

2.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

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함에 있어 사모펀드 C사의 다른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풋옵션을 파생상품으로 인식하고 평가하여야 함에도,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파생상품부채(2,324억원) 및 파생상품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풋옵션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.

3.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

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(금융상품: 인식과 측정) 문단9에 따르면, 파생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기타계약을 의미한다.

-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. 기초변수는 이자율, 금융상품가격, 일반 상품가격, 환율,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,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한다. 다만,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.
- 미래에 결제된다.

②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사모펀드 다른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풋옵션이 파생상품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고, 회사가 파생상품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.

4. 감사절차 미흡사항

① 회계감사기준 200(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) 문단2, 500(감사증거) 문단1 및 505(외부조회) 문단1에 따르면, 상기 규정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,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여야 하며, 경영자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데 외부조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⁽¹⁾중요성과 고유위험 및 통제 위험의 평가결과, ⁽²⁾이미 계획된 타감사절차로부터 입수될 증거가 동 경영자주장의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자료에만 근거하여 약정사항을 검토하였을 뿐, 회사와 다른 참가자 간에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, 계약확인조회 등 추가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. 당시 이사회의사록에는 지분옵션계약 체결의 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, 사업보고서에는 지분옵션계약에 대한 기재가 없는 등 불일치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음에도, 감사인은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.

5. 시사점

회사의 이사회의사록 및 법인인감 사용대장 등의 확인을 통하여 옵션약정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, 공동지분투자의 경우 투자자 간 옵션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, 옵션 약정의 경우 파생상품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파생상품 계상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.